

## 투·융자 지원대상 세부조건 참고자료

### ◆ (주목적 투자대상) Buy R&D·M&A, 산업부 우수 R&D, 기술금융 우수기업 등 개방형 혁신성장(Open Innovation) 기업

구 분	주목적 투자대상(안)
① 혁신기술 사업화 기업	1) 민간기술 또는 공공기술(NTB 등)을 이전 받아 사업화(하고자)하는 기업 2) 기술혁신형 M&A 또는 사업재편형 M&A 추진 기업 3) 전략산업 밸류체인 또는 R&D과제의 기업들 간 SPC 또는 M&A 4)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등 사업화금융에 특화된 R&BD과제 수행기업 5) 공공분야 혁신수요 활용을 위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
② 기술금융 우수기업	1)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(TI5) 이상인 기업 2)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

\* 투자대상은 GIFT가 산업부의 산업기술 혁신정책에 맞춘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

○ 4차 산업혁명을 위해 **주목적 투자는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 분야\***를 영위하는 기업을 기본으로 하되, 그 외는 사전 협의

\* (예시) 산업부의 신산업기술로드맵, 금융위의 신성장공동기준로드맵 등

### ◆ (기업발굴) 정부와 민간 투·융자기관에서의 동시·다발적인 기업 발굴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별 가이드라인과 대상기업목록을 제공

구 분	지원대상(안)	가이드라인 제공	대상기업 제공수
① 혁신기술 사업화 기업	(①-1)	○	204개 (‘19년부터 NTB 제공 예정)
	(①-2)	○	86개
	(①-3)	○	-
	(①-4)	○	132개
	(①-5)	○	‘19년부터 제공 예정
② 기술금융 우수기업	(①-1)	○	-
	(①-2)	○	-
합계			441개

○ 민간의 원활한 지원기업 발굴을 위해 **대상기업 인정기준, 확인방법 등의 협의를 위한 관리기관-투·융자기관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**

①-1

민간기술 또는 공공기술(NTB 등)을 이전 받아 사업화(하교자)하는 기업

- (민간기술이전) 최근 3년 이내 민간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의 이전 기술의 사업화 등 투자
  - \*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이전료 입금 등을 통해 실제 기술이전 여부 확인
- (공공기술이전) NTB 등록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하는 기업 또는 “R&D재발견 프로젝트” 수행기업의 해당 기술의 사업화 등 투자
  - (NTB 등록기술) NTB에 등록된 기술을 최근 3년 이내 이전받은 기업의 이전 기술의 사업화 등 투자
    - \* GIFT 출범에 따라, ‘19년부터 NTB에 등록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중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업명, 사업자 번호 등 정보제공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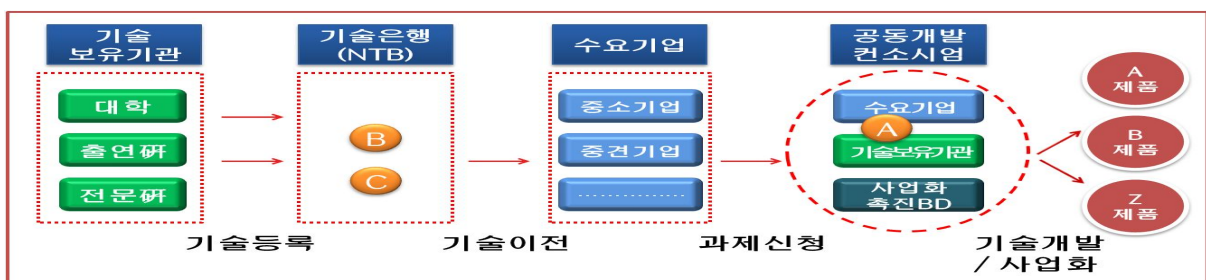
《 NTB(국가기술은행) 개요 》

- NTB(National Technology Bank, 국가기술은행) 개요
  - 기촉법 제7조에 제2항에 따른 공공연구, 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, 기술사업화 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전·사업화 종합플랫폼 (대학·연구소·기업의 이전 희망기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하는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)
- (NTB 현황) ‘17년 6만3천여개 기술이 NTB에 신규 등록되었으며, NTB에 등록된 기술 중 1,236건(700개 기업)의 기술이 이전

- (R&D재발견) 산업부 R&D재발견프로젝트 과제를 최근 5년 이내 종료한 기업 또는 수행 중인 기업의 해당 과제의 사업화 투자(‘18.6월 기준, 204개社)

《 R&D 재발견 프로젝트 개요 》

- (사업목적)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&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- (지원대상) 중소·중견기업(주관기관), 공공연구·대학(참여기관) 등
- (지원규모) 4억원/1년
- (지원내용) 기술은행(NTB)에 등록된 공공연구 보유 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 이전하고,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연구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



- (기술혁신형 M&A) 조특법 시행령 제11조3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영업부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&A 등 투자

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》

**제11조의3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)**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6. 2. 5.>

1. 합병등기일까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
2. 합병등기일까지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3.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·인력 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
4.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
  - 가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
  - 나.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
  - 다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
  - 라. 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
  - 마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
  - 바.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

- (사업재편형 M&A) 기활법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\*의 동법 제2조에 정의된 사업재편과 관련된 M&A 등 투자

\* '16.9월 사업재편기업 승인 이후 '18.7월까지 86개 기업 승인

《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 》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기업"이란 「상법」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. 다만, 「상법」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.
2. "사업재편"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.
  - 가. 합병, 분할, 주식의 이전·취득·소유,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
  - 나.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
3. "사업재편계획"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.
- 4~6. (생략)

①-3

전략산업 밸류체인 또는 R&D과제의 기업들 간 SPC 또는 M&A

□ (전략산업 밸류체인) 부품소재, 시스템, SW 등 전략산업 밸류체인 구성 기업들간의 사업화목적법인(SPC) 설립 또는 M&A 투자

《 (참고) 전략산업 밸류체인 구성 예시 》

① 밸류체인 구성 기업들간의 사업화 예시 (출처 : '18.3, 산업기술R&D 혁신방안, 산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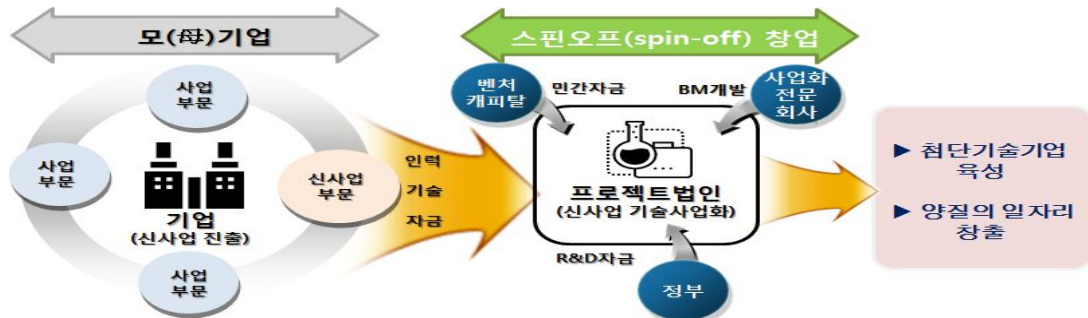
구분	R&D			서비스 (규제개선, 실증)	지원내용
	부품소재	시스템	SW		
전기·자율 주행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카메라/레이더</li> <li>활경인식센서</li> <li>V2X 통신모듈</li> <li>위장인식모듈/사고기록장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율주차시스템</li> <li>자율주행시스템</li> <li>차량관리시스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행환경인식S/W</li> <li>차량통합제어S/W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군집주행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서비스실증</li> <li>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법·제도적 정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실증 지원</b></li> <li>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실증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(주관기업)</li> </ul>
바이오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디스플레이, 배터리</li> <li>시청각, 촉각센서</li> <li>전력 및 통신용 모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바이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</li> <li>의료정보, 공통모델 및 표준화 시스템</li> <li>마스크필화 및 정보 보안 시스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클라우드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S/W</li> <li>바이오 데이터 분석 및 임베디드 S/W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상데이터 기반 개인맞춤 의료서비스 실증</li> <li>의료정보 및 리프로그 등 개인정보활용 규제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사업화 지원</b></li> <li>기술사업화목적법인 설립시 최대 15억원(2년) 사업화 자금 지원 (민간매칭비례)</li> <li><b>융자 지원</b></li> <li>기술보증기금 연계형 저리융자 2,000억원 지원('18.1)</li> <li><b>투자 지원</b></li> <li>사업화지원펀드 1천억원('18년 중)</li> <li>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 3천억원('18.1) 활용하여 지원</li> </ul>
IoT가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학, 바이오 환경 센서 부품</li> <li>전력, 통신, 제어모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공지능 TV</li> <li>IoT 세탁기</li> <li>자율로봇 청소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빅데이터 처리 S/W</li> <li>인공지능 분석 S/W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실증</li> <li>고객맞춤형 컨텐츠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수집규제완화</li> </ul>	

② 산업분야별 가치사슬 예시(출처 : '18.5, 산업기술 사업화 전략(안), KIAT)



③ 스피노프(Spin-off) 예시(출처 : '18.5, 산업기술 사업화 전략(안), KIA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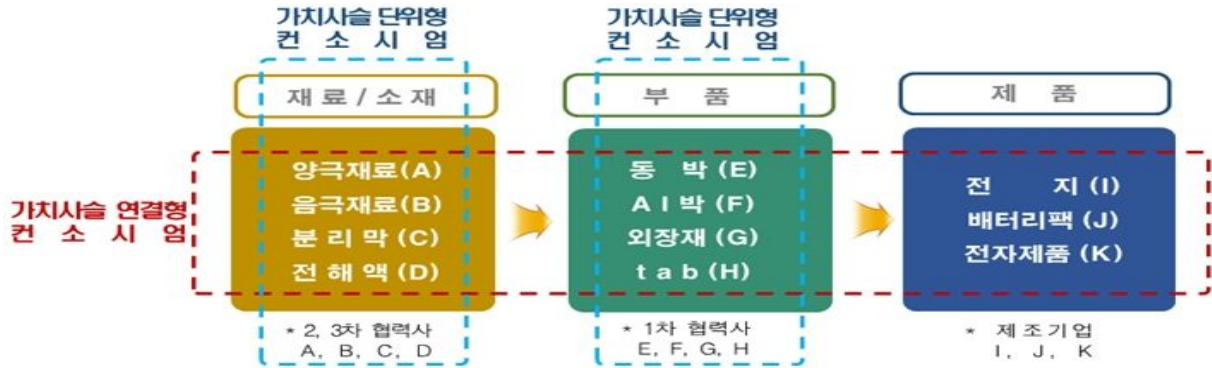
- 모기업에서 스피노프(Spin-off)를 위해 모기업·투자회사·사업화 전문회사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SPC



□ (R&D과제 컨소시엄) 산업부 R&D과제를 최근 5년 이내 종료한 컨소시엄 기업들간의 SPC 설립 또는 M&A 투자

《 (참고) R&D과제 컨소시엄 기업 예시 》

- ① 대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 예시(출처 : '18.5, 산업기술 사업화 전략(안), KIAT)  
- 기존 산업의 가치사슬 재편 및 전환 등을 위한 대기업-협력업체간 컨소시엄



- ② 민간 투자연계 R&D과제 예시(출처 : '18.5, 산업기술 사업화 전략(안), KIAT)  
- 기업의 新기술도입, 추가개발, 시제품제작 등의 쏠주기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민간 투·융자 기관과 기업의 컨소시엄에 정부가 지원하는 과제



①-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등 사업화금융에 특화된 R&BD과제 수행기업

□ (도움닫기플랫폼(TOP)) 산업부 TOP 과제를 최근 5년 이내 종료한 기업 또는 수행 중\*인 기업의 해당 과제의 사업화 투자('18.6월 기준, 88개社)

《 도움닫기플랫폼(TOP) 개요 》

- (사업목적)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쏠과정(후속기술개발(출연금) ~ 양산(민간자금)) 통합지원을 통하여 신시장·신제품 창출 지원
- (지원대상) VC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하여, 사업화전략(BM기획)·기술개발(R&D)·시제품 제작·양산 등 사업화 쏠과정 통합지원(출연금 55%이상 VC투자 필수)
- (지원규모) '18년 270억원 내외, 45개 과제 (최대 15억원/2년)
- (지원내용) BM기획, 시제품 제작, 시험·인증·허가 및 글로벌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 소요 비용 지원

- (프로젝트법인(SPaRC)) 산업부 SPaRC 과제를 최근 5년 이내 종료한 기업 또는 수행 중인 기업의 해당 과제의 사업화 투자('18.6월 기준, 24개社)

**《 프로젝트법인(SPaRC) 개요 》**

- (사업목적) 기업이 다양한 사업화 주체들과 함께 공동출자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에 따라 사업화 성과를 공유
- (지원대상) 모기업에서 기술·인력·장비 등의 스핀오프(spun-off)를 통해 설립된 신규법인으로서 촉진BD 및 민간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를 완료한 기업
- (지원규모) '18년 77억원 내외, 14개 과제 (최대 15억원/2년)
- (지원내용) BM기획, 시제품 제작, 시험·인증·허가, 글로벌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 소요비용

- (범부처연계형) 범부처연계형 과제를 최근 5년 이내 종료한 기업 또는 수행 중인 기업의 해당 과제의 사업화 투자('18.6월 기준, 20개社)

**《 범부처연계형 개요 》**

- (사업목적) 각 부처에서 지원한 新기술의 제품화/시험인증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여 공공 R&D결과물의 사업화성공 유도
- (지원대상) 과기부, 중기부 등 각 부처 R&D사업을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, 사업화로 연계할 역량을 갖춘 기업(출연금 55%이상 VC투자 필수)
- (지원규모) '18년 100억원 내외, 20개 과제 (최대 10억원/2년)
- (지원내용) BM기획, 시제품 제작, 시험·인증·허가, 글로벌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 소요비용

## ①-5 공공분야 혁신수요 활용을 위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

- 산업부 “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R&D” 과제를 최근 3년 이내 종료한 기업 또는 수행 중인 기업의 해당 과제의 사업화 투자  
\* '19년 신규사업 : 약 4~5개 기업에 총 20억원 지원 예정(기업당 최대 5억원/년, 최대 2년)

**《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R&D 개요 》**

- (사업목적) 신성장엔진 분야 신기술·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공공혁신수요 연계 R&D 지원  
- “신기술·제품에 대한 공공(부처, 지자체, 공기업 등)의 구매 수요”가 초기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, 「R&D·실증-공공조달」을 패키지 지원

<b>공공(수요처)</b>	← 신기술을 솔루션으로 제공 (기존 기술의 추가 R&D, 실증) 신기술 솔루션 구매 → (공공조달)	<b>민간(공급처)</b>	→	<b>③민간시장 판로확대</b>
①정책현안 해결		②신기술 조기 사업화		

- (지원대상)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소·벤처기업  
\* (기재부) 8대 선도사업, (과기부) 13대 혁신성장, 10대 R&D 투자플랫폼, (산업부) 5대 신산업 등
- (지원규모) 정부출연금 5억원/년(최대 2년)
- (지원내용) 양산용 수준의 기술·제품 개발 비용 + 실증 비용

## ②-1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(TI5) 이상인 기업

-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“투자용 기술평가모형” 상위 5등급(TI5) 이상을 받은 기업  
(단, 기술평가 유효기간 내에 투자집행이 이루어져야 함)
- 「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에 따라 지정되어, 산업부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\*에 참여하는 기술평가기관\*\*
  - \* '18.4, “2018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”, 산업부
  - \*\* 나이스디앤비, 나이스평가정보, 이크레더블,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6개)

## ②-2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

- 정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 
(단, 기술평가 유효기간 내에 투자집행이 이루어져야 함)

### 《 정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》

(기촉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2개)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기술보증기금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산업은행, 한국발명진흥회, 전자부품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국방기술품질원, 중소기업진흥공단, 농업기술실용화재단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나이스평가정보, 웹스, 특허법인 다래, 특허법인 다나, 이크레더블

### 《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》

- 제23조(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)**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(이하 "기술진흥원등"이라 한다)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「상법」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「상법」 제625조,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.
- 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4.12.]